# 추가약정서(구매기업용)(B2B일반자금대출용) 개정대비표

## 1. 주요 개정내용

| 현 행 | 개 정 | 비고 |
|---|---|---|
| <생략><br><br>**제 1 조(대출의 신청 및 실행시기)**<br>본인은 B2B 마켓플레이스(이하 "MP"라 한다)를 통하여 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 및 용역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은행의 인터넷(CBS)에 접속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며, 은행은 본인의 신청 즉시 대출을 실행하여 판매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매매 보호거래 방식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즉시 대출을 자동으로 실행하여 경과계정에 위탁하고 본인의 권리이전(인수) 의사 표시 후에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한다. | <좌동><br><br>**제 1 조(대출의 신청 및 실행시기)**<br>본인은 B2B 마켓플레이스(이하 "MP"라 한다)를 통하여 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 및 용역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며, 은행은 본인의 신청 즉시 대출을 실행하여 판매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매매 보호거래 방식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즉시 대출을 자동으로 실행하여 경과계정에 위탁하고 본인의 권리이전(인수) 의사 표시 후에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한다. | - 명칭 변경 반영 |
| **제 2 조(결제계좌로부터의 인출)**<br>① 제 1 조에 의하여 대출이 실행되어 본인의 결제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은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출금의뢰가 없더라도 은행이 임의 인출하여 판매업체의 계좌(일반거래방식) 또는 은행의 경과계정(매매보호거래방식)에 입금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은 동의하고 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이 약정서의 체결로써 은행에 수여한다.<br>② 전항의 결제계좌는 본인이 은행의 인터넷(CBS)에 접속하여 직접 등록한 계좌로 한다. | **제 2 조(결제계좌로부터의 인출)**<br>① 제 1 조에 의하여 대출이 실행되어 본인의 결제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은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출금의뢰가 없더라도 은행이 임의 인출하여 판매업체의 계좌(일반거래방식) 또는 은행의 경과계정(매매보호거래방식)에 입금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은 동의하고 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이 약정서의 체결로써 은행에 수여한다.<br>② 전항의 결제계좌는 본인이 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직접 등록한 계좌로 한다. | - 명칭 변경 반영 |
| <생략> | <좌동> | |

2. 개정시행일 : 2020년 11월 06일
3.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 : 적용